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불 진압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활동으로 변경 등〉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63호)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1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개요	1
-------------	---

[차규근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춘생의원안]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 검토의견	4
----------------	---

1.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활동으로 규정(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6
2. 관계지역의 정의에 산불이 화재에 포함됨을 명시(정춘생의원안)	21

I. 개 요

【차규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0인

나. 제안연월일 : 2025. 8. 6.

다. 회부연월일 : 2025. 8.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빈발 및 대형화되고 있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산지와 민가의 경계가 모호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진화에 대한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나, 산불 초기 진화와 대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은, 산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환경에 현 대응체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제1항제1호).

【정춘생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3인

나. 제안연월일 : 2025. 9.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9.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로 그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의 건물, 민가 등으로 빠르게 번져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영남권 초대형산불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가 발생함으로써 산불은 초동대응과 발생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 인력·장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언론,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다수 의견이 있음.

*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6.27.)」에서 산불대응 체계의 전면개편을 위해 산불예방은 산림청, 산불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자체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현재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은 산림청이 맡고 있으나, 산불진화 전문인력은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4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그에 반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67,000명의 소방

공무원, 9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로 최소 출동기관(119안전센터 등)이 전국에 1,532개소가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당국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II.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된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활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그 밖에 정춘생의원안은 관계지역의 정의에 산불이 화재에 포함됨을 명시하고(안 제2조제2호), “산불예방”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u>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u> 3. ~ 6. (생략)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 ----- 화재(「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 -----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 -----

현행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u>예방·진압</u> 등 지원활동 2. ~ 6. (생략) ②·③ (생략)	----- ----- ----- ----- ----- ----- ----- 1. ----- <u>예방</u> ----- -----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삭제>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활동으로 규정 등(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현행법은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소방업무”로 칭하면서(제3조제1항 등) 산림, 건축물, 차량 등을 ‘소방대상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제1호)¹⁾.

한편, 이 법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소방대의 업무를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④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소방대 본연의 업무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시행하는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활동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고²⁾,

소방활동 외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제16조의2),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를 위한 활동을 ‘생활안전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음(제16조의3)³⁾.

2)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대가 수행하는 산불에 대한 예방과 진압 활동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는데(제16조의2제1항제1호),

이는 현행 법령 체계가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주관기관을 산림청으로 하고 있고⁴⁾ 소방청은 산불유관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⁵⁾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7. 12. 26.>

[본조신설 2015. 7. 24.]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3조 제5호의2). 동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산림청을 산불진화의 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5)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2.1.] [법률 제20751호, 2025.1.3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불방지”라 한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19., 2015.12.31., 2017.7.26., 2019.1.15., 2024.5.14.>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된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

정춘생의원안은 관계지역의 정의에 산불이 화재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산불예방 활동”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점점 빈발하고 대형화되어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산불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⁶⁾.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차규근안	정춘생안	비 고
산불진압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활동		
산불예방활동	소방지원활동	(현행과 같음)	삭 제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공포한 날	

<연대별 산불 발생 일수>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9 -2023
104일	136일	142일	173일

(자료: 산림청)

6) 개정안들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산불 피해 현황(2016~2024)>

(단위 : 건, ha, m²,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391	692	496	653	620	349	756	596	279
면적	378	1,480	894	3,255	2,920	766	24,797	4,992	123

* ('16~'20년) 대형산불 발생건수 11건, 산불피해면적 7,153ha

** ('21~'25년) 대형산불 발생건수 24건, 산불피해면적 76, 149ha

※ 자료: 산불통계연보, 산림청

가.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 (차규근의원안, 정춘생의원안)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할지 여부는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활동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경우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압 활동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재 산림은 소방대상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산불을 포함한 모든 화재 신고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119긴급전화로 일원화되어있고⁷⁾, 정부 기관 중 산불 신고 접수 후 산불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기관이 소방대라는 점(산불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 평균

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17.1.17 신설)를 근거로 동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호(‘18.1.18 신설)에서 화재·구조·구급 등에 관한 긴급구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119로 일원화하였음.

소방청에서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9를 말한다.
2.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4.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소요시간: 11분 50초)⁸⁾, 산불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림화재 발생 직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불진압 업무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 차원에서 소방대가 수행하는 활동인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소방대 본연의 업무인 소방활동으로 분류되면 소방대가 다른 화재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적극·능동적으로 산불진압 활동을 할 수 있고,

산불진압을 위한 특수장비⁹⁾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도 보다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참고로 산림청은 산불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산불진화헬기가 출동하여 초동진화를 하고 이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투입되며, 산불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광역단위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가 투입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산림청 공중진화자원의 산불 발생시 출동 시간>

구 분	신고접수~출동지시	출동지시~물 투하	신고접수~물 투하
2024년 전체(191건)	14분	27분	41분
2025년 상반기(275건)	9분	25분	34분
평균	11분	26분	37분

* 과정 : 신고접수 → 산불확인 → 출동지시 → 담수 → 현장도착 → 물투하
(자료: 산림청)

<산림청 지상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산불 발생시 출동 시간>

구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20	39분	25분
2021	42분	22분
2022	35분	24분
2023	33분	23분
2024	33분	23분
2025.8	35분	24분

* 산불특수진화대의 평균 도착 시간은 소속된 국유림관리소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출동명령~도착시간)하였으며, 그 외 지역으로 출동한 경우는 거리, 도로상황, 산불 진화 완료 등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 미포함

**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중진화대 관련 상세 설명은 [참고 1] 참조
(자료: 산림청)

9) 산불진압 특수장비 예시는 [참고2] 참조

<소방대의 산불 신고 접수시 출동 시간>

(단위: 건)

구 분	합계	소요시간 [평균 11분 50초]					
		5분 이내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합계	2,821	375	1,039	1,094	233	64	16
연평균	564	75	208	219	47	13	3
2024	268	17	99	124	19	3	6
2023	546	60	174	240	57	11	4
2022	782	104	296	297	57	25	3
2021	458	66	163	181	41	6	1
2020	767	128	307	252	59	19	2

(자료: 소방청)

다만, 현재 산불 진화 관련 대응체계에 따르면 산불의 통합지휘권자는 국유림관리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림청장이므로¹⁰⁾, 개정안

10) 「산림보호법」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 ① 제37조에 따라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게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의 관계관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2.1.] [법률 제20751호, 2025.1.31., 제정]

입법 시 소방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청과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다.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인 경우를 말한다)은 산불 발생·진화·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 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산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 참고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산불 대응 관련 지휘체계를 산불 예방·대비는 산림청이, 산불 진화는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으로 이원하는 방안은 행정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재난관리 연계성이 떨어져 유기적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동 개정안들은 산불 진압의 지휘체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에 포함시켜 산불 발생 시 산불 진압에 소방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임

<산불진화 관련 현행 대응체계>

☐ 산불 진화 관련 대응체계

- 산림청-지자체 산불지휘권자(「산림보호법」 제37조 및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1,000ha 이상 초대형산불) 산림청장(단, 1,000ha 미만이라도 2개 이상 시·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 (100ha 이상 대형산불) 시·도지사(단, 100ha 미만이라도 2개 이상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경우)
 - (100ha 미만 산불) 국유림은 27개 국유림관리소장(산림청), 국·공·사유림은 시·군·구청장
- 산림청-소방청 업무 관계(「소방기본법」 제16조의2)
 - 산림청은 산불 진화 주무부서, 소방청은 민가 등에 대한 소방활동

☐ 산불대응 단계별 발령 기준

대응단계		초기대응	확산대응: 산불 1단계	확산대응: 산불 2단계	확산대응: 산불 3단계 (대형산불)
주요요건	피해면적	10ha 미만	10ha~50ha 미만	50~100ha 미만	100ha 이상
	지속시간	5시간 미만	5~10시간	10~48시간	48시간 이상
지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2개 이상 시·도 또는 1,000ha 이상의 경우 산림청장)

(자료: 산림청)

산불 진압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의견을 살펴보면,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산불진압 업무가 ‘소방활동’에 포함되는 경우 현장에서도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져 소방청이 한층 더 산불 진압 업무에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대형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 산불 통합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진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산불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 등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임.

산림청은 개정안의 취지는 산불 발생 시 소방대도 입산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산불 진압을 위하여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 차원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²⁾¹³⁾¹⁴⁾.

12)

「산림재난방지법」(26.2.1. 시행)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 의견
제36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협조) ① (현행과 같음)
1. 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1. 소방관서

13) 현행 「산림보호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소방관서”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음.

나.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예방업무를 삭제(정춘생의원안)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예방업무를 삭제할지 여부는 현행법에서 산불 예방 활동이 소방지원활동으로 명시된 이유를 살펴보고 개정안이 입법 되는 경우 현장에서 산불 예방 활동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재 사찰 등 산림 안의 각종 시설물과 산림인접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산불 진압 활동은 소방대가 담당하고 있는데¹⁵⁾, 최근에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도시의 확장 등으로 산지와 민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산림보호법」

제39조(협조)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이하 생략)

14)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산림청 의견은 부칙(타법 개정)을 통해 반영가능할 것임.

15) 산불 등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은 동법 상의 산불에 대한 규정을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 적용하되 산림 인접지역 중 건물과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에 위치한 건물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화재 예방 및 진압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함.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2.4., 2011.5.30., 2014.1.28., 2014.12.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불에 관한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있고, 산불은 초기 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대규모 재난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¹⁶⁾ 산불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산림화재 발생 직후의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적극적인 산불 예방도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에 산불예방 활동 등 소방지원활동을 규정한 것에 관하여 소방청은 기존 ‘소방활동’ 범주만으로는 소방의 역할을 충분히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지원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¹⁷⁾,

구체적으로 ‘소방지원활동’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원 활동시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함.

한편, 현행법이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1호) 화재예방업무를 소방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조제1항) 산불예방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삭제하는 경우 일반적인 화재예방업무로써 산불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림청은 산불을 포함한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은 개별법에

16) 소방청, 도시형 산림화재 대응안내서, 2025.3., 18면.

17) 법률 제10443호, 2011. 3. 8. 공포 및 시행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¹⁸⁾,

특별히 「산림재난방지법」 및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에서 정하는 “산불예방활동”은 산불조심기간 설정, 산불특별대책 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위험도평가 및 위험지도 구축,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불진화임도·산불예방 숲가꾸기·내화수림대 조성·다목적 사방댐 설치 등 예방사업, 산불예방 홍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활동이라고 설명함¹⁹⁾.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매년 산불취약시기 전국 소방관서의 소방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취약지 예방순찰, 위험한 물질 제거, 홍보방송 등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소방관서 산불예방 활동의 법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어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예방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3.5.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9.1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1.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9)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예방단계) 상세 내용은 [참고 3] 참조

업무를 삭제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관계지역의 정의에 산불이 화재에 포함됨을 명시(정춘생의원안)

개정안은 관계지역의 정의에 산불이 화재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안 제2조제2호)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현행법 제2조제1호의 소방대상물에 산림이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법 제16조의2를 개정하여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산불재난 진화 및 예방 관련 산림청 조직

구 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민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민간)	공중진화대 (공무원)	산불감시원 (민간)
운영 규모	공무직 495명	기간제 9,604명 (국가 1,405명, 지자체 8,199명)	104명	12,010명 (지방자치단체) * '25년 기준
운영 주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간	12개월	6개월 (산불조심기간 전후 180일)	연중(공무원)	6개월 내외 (산불조심기간 전후 180일 내외)
주요 대상	험준지, 야간산불 등 대응 - 인명·재산 피해 우려 지역에 우 선 투입 - 선단·측면 산불 투입	평이한 산림 등 산불대응 - 일반 산불진화 투입 - 잔불진화, 뒷불 감시	암석지, 고산지 등 산불 대응 - 인명·재산 피해 우려 지역에 우 선 투입 - 선단·측면 산불 투입 - 헬기 인명 구조 - 산불진화 지휘 보조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림 내 및 인접지역 불놓기 행위 단속 - 산불사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등
기타 사항	서류·면접·체력 검정을 통해 채용, 산불진화에 전문으로 투입	지역 주민으로서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투입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훈련 및 공중투입과 인명구조 등 활동	○ 별도의 국비 지원 없음(지방비 100%) ○ 해당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

(자료: 산림청)

참고 2 산불 진압 관련 특수장비(예시)

○ 산불진압을 위한 특수장비는 헬기, 산불진화차량, 휴대용 산불진화장비 등이 있음.

- 소방헬기는 산불진화, 산악·수난구조, 환자이송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각 시,도에서 32대의 소방헬기를 보유·운영중에 있음. 향후 산불진압 공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방헬기를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중앙119구조본에 4대~³²년, 충남·경기²⁶년, 강원²⁷년에 각 1대씩 총 7대를 확충하고 신규도입되는 헬기에는 산불진화를 위한 물탱크 장착을 의무화 할 예정임
- 산불진화차량으로는 일반화재진압과 달리 산악, 험지에서 운용가능한 산불전문 진화차(험지펌프차), 고압호스릴을 장착하여 좁은 임도로도 진행할수 있는 소형 산불진화차가 있음.

(‘25.8월 기준)

 ■ 주행 중 방수 가능, 최대 등판 능력 45도 ■ 고압호스 25mm x 200m ※ 최대 320m ■ 1.2m 도강/ 3,000ℓ	 ■ 1t / 700ℓ ■ 좁은 임도 진입 가능, ■ 산불초기 진압 효과적
산불전문진화차(험지펌프차) / 전국 28대 보유	소형산불진화차 / 전국 233대 보유

(자료: 소방청)

- 휴대용 산불진화장비는 산림내에서 보다 쉽게 호스전개가 가능하고 산불진화에 효과적인 호스배낭(25mm호스 100미터 적재), 이동형 동력펌프, 간이저수조 등이 있음

사진						
명칭	산불호스배낭 (25mm*4본/100m)	호스클램프 (40A, 25A 호스연장)	이동형 동력펌프(경량식)	Y형 연결구 (40A→25A)	간이저수조 (1,000ℓ 이상)	관창 (25mm)

- 산불진화시 진화대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비로 복사열과 불씨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산불진화복, 개인장비를 휴대할수 있는 조끼, 등짐펌프, 긴급상황에서 산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방염텐트,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이 있음.

					
산불진화복	개인장비조끼	등짐펌프	방염텐트	방진마스크	안전화

참고 3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1 예방 단계

가. 중점 추진사항

- ◆ 산불재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취약지역 집중 관리
- ◆ 산불 발생 요인 및 행위의 사전 제거 및 금지

나. 세부 활동 내용

1) 산불재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 가) 산불재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나) 산불재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다) 산불재난 위기 형태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 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등 산불재난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2) 입산통제구역 및 산불취약지역의 체계적 관리

- 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고시 및 입산 통제 정보제공
- 나) 국가유산, 사찰, 국가 주요 기간산업 시설, 군사시설, 도심지 등 주택 밀집지역 관리
- 다) 산림보호구역, 시험림, 채종림, 보호수 등 보호지역 관리

3) 산불 취약지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추진

- 가)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에 설치된 산불소화시설을 이용한 사전 살수, 군 사격 훈련장 주변 방화선 설치 등 예방 조치
- 나) 국가유산, 사찰, 국가 주요시설 및 철도·도로 연접지,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 주변 산림에 대한 안전공간 조성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실시
- 다) 국가유산, 사찰, 다중이용시설 등 보호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산불

소화시설 설치

- 라) 논·밭두렁,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산림 인접지역 산
불 발생요인 사전 제거사업 추진
- 마) 산불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위험지
실태조사 추진

4) 입산객 관리 및 산불 계도·단속 활동 강화

- 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
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의 금지 및 단속
- 나) 입산객의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단속, 감시초소 운영
- 다) 어린이 불장난, 산림 내 무속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화
- 라) 산불경보에 따라서 산불감시원, 사회복무요원, 공무원의 현장 배치
- 마) 전국 주요 산의 등산로를 대상으로 기동 단속 활동 전개

5) 산불 조기 발견 감시망 구축·운영

- 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및 지자체 임차 항공기의 참여
- 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가동, 산불감시원 배치
- 다)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중감시 및 신고 협조 체계 강화
- 라)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및 스마트 산림재난 앱 운영 활성화로 조기 발견·
신고체계 구축
- 마) 지능형 산불감시 ICT 플랫폼 구축·운영

6) 다양한 산불방지 홍보 활동 전개

- 가) 언론매체 활용: 공익광고, 중앙 및 지방 TV, 라디오 및 일간지, 대형
전광판 등
- 나) 소셜미디어 활용: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SNS, 유튜브 등

- 다) 이동, 고정 홍보물 설치 및 교육 홍보용 자료 제작·배포
- 라) 민간단체·학생 등 시민 주도의 예방 활동 지원
- 마) 체험형 산불예방 홍보 방안의 강구
- 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과 연계한 산불예방 홍보
- 사) 산불발생 시기별·원인별 맞춤형 홍보
- 아)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홍보활동 전개

다. 기관별 임무와 역할(예방)

구 분	임무와 역할
산림청 (재난관리주관기관)	○ 담당공무원, 산불진화대원들의 산불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산불예방 홍보, 교육 및 계도 활동 ○ 산불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매뉴얼 관리·운영 및 점검 개선 - 실무 매뉴얼 작성·배포 ○ 산불피해 저감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 ○ 산불확산 예측 및 대응관련 기술 개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파·협조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농해수비서관실)	○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 보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 국가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총괄 및 집행계획의 승인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기 획 재 정 부	○ 산불피해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교 육 부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재난 예방교육 및 훈련 강화 ○ 산불재난에 취약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강화 ○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 학교 휴업 및 등·하교 시간 조정 기준 마련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 주요 정보통신 시설·설비의 보호 및 안전점검 ○ 산불대책본부-방송사간 사전 협조체계 구축

구 분	임무와 역할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두절에 따른 정보공유 대책 강화
국방부	○ 긴급 군 지원체계 구축 ○ DMZ·민통선·군사격장 등 관할지역의 산불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진화대책 수립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조정·승인 등 ○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재난관련 매뉴얼 관리·운영 및 점검(교육, 훈련 등)·개선 ○ 예·경보 시설, 민방위경보시스템 및 재난방송 협조체계의 구축 ○ 민방위경보시스템 및 재난방송 협조체계의 점검 ○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산림인접 문화·체육 시설 등 사전 대비·점검 계획 수립 ○ 산불방지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 책임시설(노후저수지 등)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 ○ 영농교육 시 무단 소각행위 금지 계도 및 산불교육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소관 산업·에너지 관련 시설 안전관리 점검 및 산불피해 방지대책 마련 ○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에 대비한 광역지원체계 구축 ○ 전력가스원유수급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안전 문화 확산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지원체계 가동 점검 및 산불피해지역 방역대책 수립 ○ 사회복지시설 등 산불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보강 지원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대책 포함)
환 경 부 (국립공원공단)	○ 국립공원지역 시설물관리 ○ 국립공원 종사자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산불예방 홍보, 교육 및 계도 활동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산불재난관련 댐, 하천 시설물 및 도로, 철도, 비행장 관리 ○ 긴급 도로통제 상황 발생대비 경찰청간 협조체계 구축 ○ 지하철·철도 운행중단 대비 대체교통수단 확보 ○ 산불예방홍보,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문화확산운동(교육홍보 등) 전개
경 찰 청	○ 교통통제상황 발생 대비 도로관리청과 신속 통제를 위한 사전 협조체계 구축
소방청	○ 소방력 출동태세 확립 및 지원부서 관리 ○ 현장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지원 ○ 민가 보호를 위한 소방지원활동 수행 ○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 파악 및 인명 구조·대피계획 수립
기 상 청	○ 산불관련 기상정보의 유관기관 전파 ○ 건조주의보·경보 발령 시 '산불조심' 당부

구 분	임무와 역할
국가유산청	○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국가유산에 대한 산불예방 대책 시행 및 위치정보 제공
지방자치단체	○ 산불 예방 및 피해지역 산림복구 조기 완공 ○ 산불취약지역 상시 점검 및 예찰 활동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관리·운영 및 점검 개선 ○ 비상시 연락체계 점검(산불유관기관 및 담당자) ○ 정기적으로 산불진화(주민대피 포함) 훈련 실시 ○ 응급 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여부 점검, 관리 ○ 예·경보시설, 경보시스템 및 재난 방송 협조체계 구축

(자료: 산림청)